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 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학예연구관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6”을 “187”로,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3”을 “182”로 한다.

별표 3의2 중 학예연구관 “57”을 “58”로, 학예연구사 “151”을 “150”으로 한다.

별표 4 공업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을 신설하고, “방호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방송무대주사 “7”을 “8”로, 방송무대주사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14 1)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

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 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 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 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 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 명)은 <u>2023년 6월 30일까지</u> 존 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 ----- ----- ----- ----- ----- ----- ----- ----- <u>2025년 6월 30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u>186</u>	<u>187</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 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 예연구사	<u>183</u>	<u>182</u>	-1
•	•	•	
•	•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학예연구관			<u>57</u>		<u>58</u>	+1	
학예연구사			<u>151</u>		<u>150</u>	-1	
	.		.		.		
	.		.		.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1		
<u>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u>방호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무대주사			<u>7</u>		<u>8</u>	+1
	•		•		•	
	•		•		•	
방송무대주사보			<u>16</u>		<u>15</u>	-1
	•		•		•	
	•		•		•	